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간부급(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서는 정원에 부합하게 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전라남도 및 산하 시·군의 5급 이상 직급별 정·현원을 확인한 결과, 상기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는바, 해당 기관에서는 기능에 부합토록 정원을 재책정하거나 정원에 부합토록 현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순천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화순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직위에 대하여 정원 재책정 또는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 배치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사례 >

지자체명	직위	정원	현원	비고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운영과장	행정4급	기술4급	
	연동장	행정5급	건축5급	
	원산동장	행정5급	복지6급	
	동명동장	행정5급	시설5급	
	유달동장	행정·농업·해양수산5급	복지5급	
	하당동장	행정5급	간호5급	
	신홍동장	행정·시설5급	복지6급	
	삼향동장	행정·농업·녹지5급	공업5급	
	보건소장	기술4급	행정5급	
	환경보호과장	행정·보건·환경5급	공업5급	
순천시	자원순환과장	행정·환경·시설5급	공업5급	
	자동차등록사무소장	행정·공업5급	시설5급	
광양시	서면장	행정·복지·녹지·보건5급	시설5급	
	덕연동장	행정·복지·보건·시설5급	의료기술5급	
	옥룡면장	행정·복지·농업·녹지5급	방송통신5급	
	옥곡면장	행정·복지·농업·시설5급	보건5급	
	다압면장	행정·복지·농업·녹지5급	공업5급	
	보건소장	기술4급	행정4급	
	공원과장	행정·녹지·시설5급	농업5급	
	녹지과장	행정·녹지5급	농업5급	
	수북면장	행정·복지·농업·보건5급	시설5급	
	오곡면장	행정·복지·녹지·환경5급	농업5급	
담양군	민원실장	행정·기술4급, 행정·시설5급	공업5급	
	의회사무과장	행정5급	수의5급	
화순군	도곡면장	행정·공업·농업·시설5급	간호5급	
	전문위원	행정·농업·시설5급	복지5급	
강진군	마량면장	행정·해양수산·시설5급	복지5급	
	병영면장	행정·환경·시설5급	농업5급	
해남군	복일면장	행정·복지·공업·시설5급	농업5급	
	스포츠사업단장	행정·시설5급	농업5급	
영암군	서호면장	행정·복지·농업·시설5급	녹지5급	
함평군	엄다면장	행정·사회복지·농업5급	시설5급	
	축수산과장	행정·농업·수의·해양수산5급	시설5급	
영광군	홍농읍장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5급	복지5급	
	군남면장	행정·농업·보건·시설5급	복지5급	
	염산면장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5급	공업5급	
완도군	보길면장	행정·복지·해양수산·환경5급	보건5급	
진도군	세무회계과장	행정·시설5급	해양수산5급	
	의회사무과장	행정·농업·시설5급	해양수산5급	
	경영지원과장	농촌지도관	농업5급	
	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공업·시설5급	환경5급	
신안군	세계유산과장	행정·해양수산·환경·시설5급	사서5급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제 목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

기 관 명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효율화 및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 기능·인력 재배치 기준 >

① (기능) 지원기능,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으로 재배치

* 예시 : 도시개발·산단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 지역별 특화 역점과제·국제행사 등 지역현안 분야,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법령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분야

② (현장) 본청 또는 감독부서에서 읍면동, 일선 서비스 현장으로 재배치

③ (서비스 편차) 인력 부족으로 안전·복지 등 행정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 되어있는 현업부서 또는 읍면동으로 재배치

④ (근로시간) 공직내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적정 배치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의 1% 이상을 재배치 대상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재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속해서 2년 이상 목표치 미만 실적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여수시장, 나주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 분야의 인력을 일선 현장 및 신규 핵심사업 분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

< 기능·인력 재배치 미흡 사례 >

연번	지자체명	재배치 달성을(%)			비고
		'17년	'18년	'19년	
1	여주시	1.40	-	-	2년이상 목표치 미만
2	나주시	-	-	-	"
3	담양군	-	-	-	"
4	곡성군	-	-	-	"
5	구례군	-	-	-	"
6	고흥군	1.40	-	-	"
7	보성군	-	-	-	"
8	화순군	-	-	-	"
9	장흥군	-	-	-	"
10	강진군	-	-	-	"
11	해남군	1.10	-	-	"
12	영암군	-	-	-	"
13	무안군	2.30	-	-	"
14	함평군	-	-	-	"
15	영광군	-	-	-	"
16	장성군	-	-	-	"
17	완도군	-	-	-	"
18	진도군	-	-	-	"
19	신안군	-	-	-	"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월)」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6~‘20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세부 정비방안으로는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 후 실효성·안전 특성 등에 따라 위원회 폐지, 협의체 전환 등을 실시(조례 등 근거규정 개정·폐지 포함)할 것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 사실상 비상설 운영하는 경우(위원 미구성 포함)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비상설 운영 명시 필요

※ 조문(예시) :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해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기와 같이 정비하여야 하나, 일부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상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

지자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임의)	조례 등	
전라남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자문위원회	○		12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심의위원회 및 시장 분쟁조정 위원회	○		13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	14
	도로노선조정위원회		○	4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	○		19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	15
	지하수 관리위원회	○		14
목포시	면책심의위원회		○	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5
	설계자문위원회	○		10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	10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		11
	조각작품 심의위원회		○	0
	관광진흥위원회		○	2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위원회		○	7
	교통 대책 위원회		○	9
	교통 안전 대책 위원회		○	11
	제안심사위원회		○	11
	예산성과 금심사 위원회	○		10
	규제 개혁 위원회		○	26
	경로당 운영 위원회		○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		○	12
	시사편찬위원회		○	0
	문화예술회관 운영 자문위원회		○	12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	12
	현혈 추진위원회	○		10
	안전 관리 민관 협력 위원회	○		20
	정책 자문위원회		○	39
	목포 자연사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		○	13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	11
	시민 소통 위원회		○	33
	장의 심의 위원회 장의 위원회		○	0
	소비자 정책 위원회		○	0
	투자 유치 위원회		○	0
	지역 상권 발전 심의 위원회		○	15
	지식산업 클러스터 협의회		○	16

여수시	면책심의위원회	○	7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	16
	지역경제협의회	○	19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1
	에너지위원회	○	12
	기업지원대책위원회	○	10
	공유촉진위원회	○	11
	여수시무장애도시실무위원회	○	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	5
	마리나자문위원회	○	14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	10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	20
	택시자문위원회	○	13
순천시	헬스투어협의회	○	10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	19
	안전관리자문단	○	18
	한옥위원회	○	7
	상권활성화협의회	○	13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	9
	향토유적위원회	○	1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20
나주시	역사적인물선양사업위원회	○	0
	천연염색공방운영위원회	○	9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	15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19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0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	14
광양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	12
	어르신행복도시자문위원회	○	9
	체육진흥협의회	○	9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1
	CCTV운영협의회	○	13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	16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20
	공중복용장운영위원회	○	9
	식생활교육위원회	○	18
	물재이용관리위원회	○	13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	○	9
	교통안전정책심의회	○	9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0
곡성군	군정평가위원회	○	8

곡성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	10
	정보공개심의회	○		7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4
	체육진흥협의위원회		○	14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		18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13
구례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	9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		○	9
	구례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	6
	공간정보위원회		○	8
	청년정책위원회		○	12
	인구정책위원회		○	15
	친환경농업육성발전위원회		○	15
	산수유 보호·육성 관리위원회		○	13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	12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	12
	기록물평가심의회	○		0
	보안심사위원회	○		23
	농업발전을위한민관협의회		○	23
	유자육성위원회		○	15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9
	투자유치심의위원회	○		1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15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5
	부실공사방지위원회		○	7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	8
	감사위원회		○	7
보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	9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7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5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4
	전남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	8
	건설사업종합기획단		○	16
	화순군남북교류 협력추진위원회		○	15
화순군	읍면지편찬위원회		○	16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2
	친환경도시농업위원회		○	8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	0
	기록물평가심의회		○	6
장흥군	정보화위원회		○	15
	교육환경개선위원회		○	1
	공간정보심의위원회		○	8

장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5
	계약심의위원회	○	11
	천관문화관운영위원회	○	7
	자원봉사발전위원회	○	15
	노인복지관운영위원회	○	9
	노인일자리위원회	○	3
	물가대책위원회	○	16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	○	14
	환경위원회	○	10
	장흥한우육성위원회	○	10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9
	노사민정위원회	○	15
	화물공영차고지운영위원회	○	7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13
	평생학습추진위원회	○	9
해남군	관광진흥협의회	○	11
	청년정책위원회	○	16
	양성평등위원회	○	12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	6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	10
	정보화위원회	○	7
	노사민정협의회	○	15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	○	9
	월출산로프웨이설치추진위원회	○	30
	교통안전대책위원회	○	1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	13
	향토문화유산위원회	○	30
	체육진흥협의회	○	15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2
	지방청소년위원회	○	14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	7
	안전관리실무위원회	○	15
	지적재조사위원회	○	3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	14
	한옥위원회	○	9
	후생복지운영협의회	○	13
무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8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1
	투자유치위원회	○	7
	노사민정협의회	○	10
	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	12
	재해지도 작성 자문위원회	○	9

무안군	조생양파최저생산비지원운영위원회		○	15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3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0
	함평천지한우육성위원회		○	10
	교육환경발전위원회		○	11
	노사민정협의회	○		13
	군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	10
영광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		0
	적극행정면책위원회		○	5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	9
	기록물평가심의회	○		5
	명문고육성위원회		○	0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9
	노사민정위원회	○		12
	소상공인지원위원회		○	10
	여성농어업인정책심의위원회		○	9
	환경위원회		○	13
장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16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	12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4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8
	경관위원회	○		20
	청소년위원회		○	12
	노사민정협의회	○		13
완도군	필암서원유물전시관운영위원회		○	10
	인구정책위원회		○	20
	한옥위원회		○	7
	체육진흥협의회	○		13
진도군	쇼핑몰위원회		○	7
	진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10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0
	공동위원회	○		17
	노사민정협의회		○	15
	물가대책위원회		○	15
	갓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	8
신안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	6
	체납정리위원회		○	0
	보안심사위원회		○	5
	자체평가위원회	○		10
	규제개혁위원회		○	12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15
	성희룡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4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제 목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기 관 명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용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동 규정 제4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제출 대상·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9~‘20년)을 통해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매년 12월)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조직 운영토록 안내한 바 있다.

❖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기구정원 규정』 제40조 및 '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편집)

-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전라남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등이 상기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였다.(위반사항 : 불임)

이에 전라남도 산하 시·군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보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내실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